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
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7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제정된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의 감사기관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컨설팅감사 적용 범위(안 제3조)
 - 1. 의회사무처, 합의행정기관의 추가
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추가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촉진, 행정의 적법성·타당성 고양, 규제 개선 등

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“사전 컨설팅감사”의 적용범위를,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자체감사의 적용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은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」을 두고 있음.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,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두고 있고, 이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한편 본 조례는 “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”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,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의 대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,
 -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 제2조에 감사대상 기관을 정하면서, 2013. 12. 27. 일부개정으로 “의회사무처”를, 2023. 2. 17. 일부개정으로 “합의제행정기관”을 추가하였음에도,
 - 본 조례 제3조에서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에는 위 두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.
-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도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과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를 일치시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,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, 의회사무처, 합의회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도 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도 출자·출연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<u>본청,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도 출자·출연기관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<u>본청,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, 의회사무처, 합의제 행정기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<u>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도 출자·출연기관</u></p>